

광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529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 담당변호사 심재훈, 최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태, 고단비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A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한 매매계약은

9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보조참가인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2.
7. 28. 광주지방법원 2022개회5970 사건에서 원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소송수계인은 소송 수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

별지